

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의안 번호	65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2008. 11.
제출자 중구청장

1. 제정이유

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,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옥외광고물 관리 및 개선을 추진하고자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우리구로 배분되는 수익금, 허가·신고 등에 따른 수수료,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, 이행강제금,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, 보조금,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으로 조성함.(안 제2조)
- 나.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, 경관개선,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,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,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,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며, 기금의 운영관리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함. 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우리구의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며, 기금운용계획안, 기금결산 보고서안,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 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. (안 제5조)
- 라.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우리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함.

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우리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함. (안 제6조, 제8조)

3. 근거법규 :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의2 (붙임)

4. 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입법예고 사항 :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008. 9. 16부터 2008. 10. 6까지 구공보 및 인터넷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음.

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옥외광고정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재원)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6조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울산광역시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로 배분되는 수익금
2.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3.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4.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
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6.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
7.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

제3조(기금의 용도)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.

1.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
 2. 경관개선
 3.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
 4.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
 5.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
 6. 그 밖에 울산광역시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이라 한다)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4조(기금의 운영관리)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.

- ②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한다.

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,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.

제5조(심의위원회)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운영은 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안

2. 기금결산보고서안

3.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6조(기금운용 계획)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
2.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
3.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울산광역시중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(회계공무원)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옥외광고 담당국장

2. 기금출납원 : 옥외광고 담당주사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금결산)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

호와 같다.

1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
2.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
3.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
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9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.
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울산광역시중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근 거 법 규

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

제6조의2 (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) 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1.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·군 또는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
 2.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 3.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 4.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
 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
 6.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의 보조금
 ③ 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, 경관 개선,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, 그 밖에 시·군 또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의안심사보고서 (의안번호 655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08. 11. 11(화)
-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회부 : 2008. 11. 13(목)
- 위원회상정 : 2008. 12. 2(월)

3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,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옥외광고물 관리 및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우리구로 배분되는 수익금, 허가·신고 등에 따른 수수료,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, 이행강제금,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, 보조금,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으로 조성함(안 제2조)
-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, 경관개선,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,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,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,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며, 기금의 운영관리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함. (안 제3조 및 제4조)
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우리구의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며, 기금운용계획안, 기금결산 보고서안,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(안 제5조)
-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우리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우리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함(안 제6조, 제8조)

4. 근거법규

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의2

5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(2008. 9. 16 ~ 10. 6)

6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방영환)

- 본 조례는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 옥외광고물 관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